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66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redacted]학원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구합6936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10.
판 결 선 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5,564,120원, 농어촌특별세 5,166,280원, 등록세 12,135,370원, 지방교육세 4,126,420원 합계 86,992,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4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기재" 다음 ",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어렵고,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이 사건 건물 입구 외벽 상단에는 '인적자원개발센터, 산학협력관'으로 기재된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6층 복도 벽면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증축된 건물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원고는, 본래 대학이 수행해 오던 산학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과 회계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별도 법인 형태로 둘 뿐이고, 산학협력단이 실제로 산학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운영과 관리는 모두 대학이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04

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도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에는 기술혁신센터, 산학연협력센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원고가 HRD사업단이라고 주장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도 그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산학협력단 소속 과장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